

조세 재정

2017. 6. 30(통권 제50호)

BRIEF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 개선방향 연구

홍성훈 부 연구위원(044-414-2222)

정재호 선임연구위원(044-414-2120)



BRIEF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 개선방향 연구*

홍성훈 부연구위원(044-414-2222)

정재호 선임연구위원(044-414-2120)

I. 다국적기업의 세금회피와 국제적 대응	02
II. 다국적기업의 세금회피 전략	03
III. 우리나라 및 국가별 이자공제제한 제도 현황	05
IV. 실증분석	07
V. 이론분석	09
VI. 결론 및 시사점	10



* 본고는 저자의 2016년도 기본연구과제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 개선방향 연구』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I 다국적기업의 세금회피와 국제적 대응

- 다국적기업은 세금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계열사들의 지배구조와 거래구조를 복잡하게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별 상이한 세법과 조세조약의 취약부분을 이용하여 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을 여러 계열사들을 포함하는 기업 그룹으로, 계열사들을 복잡한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들 수 있음
 - 다국적기업 그룹의 조세전략은 국가마다 상이한 세법과 조세조약에서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성
- 국가별 세법과 조세조약을 이용하기 때문에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법 규정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법의 원래 취지 및 법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관점과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여러 주요국의 정부와 국제기구에는 조세회피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취약한 국제조세제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주요국의 정부와 국제기구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회피 전략에 남용될 여지가 있는 취약한 국제조세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OECD/G20에서 추진해온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
 -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양한 조세회피 전략 중에서도 특히 계열사 간 차입거래 및 이자지급을 통한 전략을 방지하는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음

II 다국적기업의 세금회피 전략

- 다국적기업 그룹이 계열사 간 차입거래 및 이자지급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 차입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
 - 많은 국가에서 기업에 법인세 부과 시 이자를 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소득에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있으나, 배당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그러므로 기업은 재무구조를 선택할 때 출자보다는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자비용을 공제받고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차입금을 조달하여 재무적 불확실성을 관리하고자 특수관계인(즉 대주주 또는 계열사)으로부터 차입함
 -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아무리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차입금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경우 재무 건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마치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는 것처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차입금을 조달하여 재무적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
 - 안정적인 차입금 조달 방법 중 하나가 특수관계인(즉 대주주 또는 계열사)으로부터의 차입임

- 국가별로 법인세율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자비용 공제, 전략적인 이자율(이전가격) 산정, 혼성금융상품 거래, 거주국 과세이연 등을 결합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이 계열사 간 차입거래 및 이자지급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음
 - 저세율국에 있는 계열사와의 차입 계약에서 이자율을 시장이자율보다 높게 책정하면 더 많은 수익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할 수 있음
 - 차입 계약시 부채·자본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지급국(고세율국)의 계열사에서는 이자비용을 공제받으면서 수취국(저세율국)의 계열사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익금불산입 되도록) 하면, 이자 지급을 통해 이전된 소득에 대해 국제적으로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도 가능함

- 몇몇 그룹은 저세율국의 계열사에 소득을 유보하여 모회사의 소득이 감소하고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도 감소하여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세율국 계열사로부터 모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사주를 매입
- 저세율국 계열사로부터의 차입과 자사주 매입을 결합하여, 거주국 조세회피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과세이연으로 인한 주식 가치 하락의 가능성을 방지

Ⅲ 우리나라 및 국가별 이자공제제한 제도 현황

- 우리나라는 ‘과소자본세제’라는 이름으로 이자공제제한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현 제도는 최근 국제적인 제도의 형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에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를 넘어서는 차입금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함
 -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초과분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있어 상당히 강한 과소자본세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제도의 형태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최근의 국제적 논의에서는 주로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로 한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소득(EBITDA;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소득)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비율을 계산할 때 개별 기업 기준으로 보거나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보는 방법 등 다양한 한도 설정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OECD/G20의 BEPS 방지 프로젝트의 Action 4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음
- 미국은 1986년부터 소득잠식(earnings stripping) 방지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EBITDA의 50% 이하로만 이자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음
 -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EBITDA의 50% 이하로만 이자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50%를 초과하는 이자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50% 이하인(이른바 ‘세이프 하버’ 규정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비용 공제에 제한을 두지 않음
- 독일도 2008년부터 소득잠식(earnings stripping) 방지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부채비율과 EBITDA 비율에 따라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 그룹의 독일 계열사가 그룹의 평균적인 부채비율을 감안한 기준(그룹 평균 부채 비율에 2%p를 더한 값)보다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EBITDA의 10% 이하이면 공제에 제한없음
 -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EBITDA의 30% 이하인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30%를 초과하는 이자는 공제를 부인
- ● 일본은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 및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모두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음
 - 2013년 이전에는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만을 기준으로 하였고, 2013년부터는 두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공제 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이 3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분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과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분 이자지급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의 이자에 대해 공제를 부인
- ● 제도는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로 삼느냐 또는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로 삼느냐에 따라 차입 또는 이자지급의 대상을 특수관계인으로만 제한하느냐에 따라 구분 가능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비교하면, 공제를 제한하는 기준을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로 하는지 또는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로 하는지에 따라 제도를 큰 틀에서 구분할 수 있음
 - 차입 또는 이자지급의 대상을 특수관계인으로만 제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음
 - 각각의 기준 비율을 어느 수준에서 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제도가 크게 변화

IV 실증분석

- (실증분석 목적) 앞에서 설명한 각각의 비율 기준이 다국적기업의 실효적인 세금 부담과 어떤 상관성을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
 - 국가마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과연 각각의 기준이 다국적기업의 실효적인 세금 부담과 어떤 상관성을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
 - 구체적으로 다국적기업의 부채(차입금) 비율, 이자비용 비율과 실효세율 사이의 실증적 관계를 분석
 - 각각의 비율 기준이 실효세율과 음(-)의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인다면, 각각의 비율을 기준으로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여(즉 각각의 비율을 낮추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음

- (실증분석 도구) 톰슨 로이터스 아이콘에서 추출한 미국계 주요 다국적기업 그룹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
 - 실증분석을 위해 톰슨 로이터스 아이콘(Thomson Reuters Eikon)에서 추출한 미국계 주요 다국적기업(S&P 500 지수 구성 기업) 그룹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분석 대상 미국계 다국적기업 그룹은 대부분(98%) 이자비용 공제한도인 EBITDA의 50% 이하에서 이자를 지급
 - 한편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이 약 5% 정도 있었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적어도 25% 정도 존재

- (이자비용 비율-실효세율 분석결과) 다국적기업 그룹의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증가하면 실효세율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전망을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금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와 회계기준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 모두에 있어, 이자비용 비율이 증가할 때 실효세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무형자산 및 연구개발비 비중을 통제하면 이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도출함
- (세이프 하버 규정-실효세율 분석결과) 대다수 다국적기업이 세이프 하버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실효세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제한적으로만 음(-)의 상관성을 관찰함
 -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이프 하버 규정 충족과 실효세율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분석결과,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확신하기 어려웠고 제한적으로만 음(-)의 상관성을 관찰할 수 있었음
 - 단순히 세이프 하버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부채) 비율과 실효세율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V 이론분석

- 실증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거주국의 과세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의 재무구조가 국제적으로 부담할 세금의 합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으로 분석
 - 이론 모형에서는 두 계열사가 각각 거주국의 모회사와 원천국의 자회사로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거주국의 과세방식에 따라 경우를 구분
- 거주국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때는 통상적인 세율 조건하에서 원천국 자회사의 재무구조가 다국적기업 그룹의 전 세계 세금 부담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상적인 세율 조건하에서는 거주국에서의 법인세율이 충분히 높아서 차입을 통해 원천국에서 절감한 세금만큼을 거주국에서 다시 부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거주국에서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때는, 거주국 법인세율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원천국에서 차입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하여 국제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됨
 - 특히 거주국의 법인세율이 원천국의 법인세율과 배당소득 원천세율을 합산(gross-up)한 세율보다 작은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은 원천국 자회사가 차입거래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세부담을 낮출 수 있었음
- 다국적기업 그룹이 저세율국 자금조달 계열사가 원천국 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의 형태로 소득을 이전받도록 하여 국제적인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 원천국은 자회사의 이자비용 비율 한도를 조정하여 세원 잠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VI 결론 및 시사점

- ●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도 전환에 따른 기업 경영난 또는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줄이려면, 미국 과소자본세제의 세이프 하버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을 마치 세이프 하버 규정처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 경우,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이 2배 이하로, 현행 규정에 따라 모든 이자 지급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던 다국적기업 그룹의 우리나라 계열사는 고스란히 모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 전환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없음
 - 차입금 비율이 2배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계열사는,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한 한도에 따라,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이자지급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 한도마저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 이자지급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위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하면,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이 한도인 2배를 초과하면서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한도 역시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계열사만 모든 이자지급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구체적으로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한도를 어느 수준에서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자비용 공제가 제한되는 기업이 결정되겠지만, 통상적인 한도에서 공제가 제한되는 기업의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제도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다국적기업 그룹의 우리나라 계열사에 대한 재무 자료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한도에 따라 제도 전환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여 제도를 설계해야 함

| 참고문헌 |

- 홍성훈 · 정재호,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 개선방향』, 연구보고서 16-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BRIEF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 개선방향 연구

2017. 6. 30(통권 제50호)

- 발행인 : 박형수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전 화 : 044-414-2123
 - 팩 스 : 044-414-2129
 - 인쇄처 : 아미고디자인
-

